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8

제출년월일: 2010. 7. .

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가. 민선5기 출범에 따라 "경제수도 인천"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위하여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,

- 나.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의 교육대(팀)를 직속기관인 소방안전 학교로 확대 신설하고자 하며,
- 다.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0. 8. 31 일에서 2013. 8. 31일 까지 연장하고,
- 라. 기관(부서)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고, 항만공항물류국을 삭제함.(안 제6조)
- 나. 기획관리실의 다수인 조정 및 특수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. (안 제7조)
- 다.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함.(안 제7조의2)
- 라. 가정복지국에 저출산업무를 신설함.(안 제9조의2)
- 마.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관련 업무를 삭제하고, 해양수산관련 업무를 신설함.(안 제10조)
- 바.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함.(안 제16조)
- 사. 소방안전본부에 교육대 업무를 삭제 함.(안 제17조)
- 아. 소방안전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.[안 제4절의2(안 제26조의2부터 안 제26조의4까지)]

- 자. 종합건설본부의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검단지역 구획정리사 업으로 조정하고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 업 무를 삭제 함.(안 제38조, 안 제39조)
- 차.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0. 8. 31일 에서 2013. 8. 31일 까지 연장함.[안 (조례 제4030호) 부칙 제2항]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12쪽)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기획관리실, 자치행정국"을 "기획관리실, 경제수도추진본부, 자치행정국"으로, "환경녹지국, 항만공항물류국, 아시아경기대회지원 본부"를 "환경녹지국,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"로 한다.

제7조제9호와 같은 조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경제수도추진본부)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- 1. 경제수도추진 분야 발전비전과 전략 수립 및 중·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 - 2.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·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도시균형발전에 및 중·대형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 - 4. 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
 - 5. 다수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
 - 6.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사항
 - 7. 항만·공항 물류 및 화물자동차운수·물류에 관한 사항
 - 8. 해양개발 및 항만·공항건설에 관한 사항
 - 9. 특수지역(서해5도서) 지원에 관한 사항
 - 10. 기업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 - 11.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관한 사항
 - 12.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
- 제9조제3호 중 "질병, 저출산"을 "질병"으로 한다.
- 제9조의2제1호 중 "여성·보육복지 및 다문화가족지원"을 "여성·보육 복지, 다문화가족지원 및 저출산"으로 한다.
-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13호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3.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
 - 14.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- 제16조를 삭제한다.
- 제17조제4호 중 "119종합방재센터, 교육대 및 소방항공대"를 "119종합 방재센터 및 소방항공대"로 한다.
- 제3장에 제4절의2(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절의2 소방안전학교

- 제2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3조 및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(이하 이 절에서 "소방학교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에 둔다.
- 제26조의3(업무)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 - 1.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
 - 3. 소방전문기술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제26조의4(하부조직 등) 소방학교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38조제1항 중 "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,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"을 "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"으로 한다.
- 제3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.
 - 10.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
- 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"2010년 8월 31일"을 "2013년 8월 31일"로 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제17조제4호 및 제3장제4절의2(제26조의2부터 제26 조의4까지)의 개정규정은 소방안전학교의 개교 전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.
-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15조제2항 중 "인천광역시 소방교육대"를 "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"로 한다.
 - ②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- 제21조제1항 중 "소방학교·소방교육대"를 "소방안전학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소방학교"를 "소방안전학교"로 한다.
- ③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2항 중 "기획관리실장"을 "경제수도추진본부장"으로 한다.
- ④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3항 중 "경제통상국장 및 항만공항물류국장"을 "경제수도추 진본부장 및 경제통상국장"으로 한다.
- ⑤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2항 중 "경제통상국장, 건설교통국장, 도시계획국장, 항만공항물류국장"을 "경제수도추진본부장, 경제통상국장, 건설교통국장, 도시계획국장"으로 하고, 제4조제2항 중 "항만공항물류국장"을 "경제수도추진본부장"으로 한다.
- ⑥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3항 중 "경제통상국장"을 "경제수도추진본부장"으로 한다.
-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"경제통상국장"을 각각 "경제수도추 진본부장"으로 한다.
- ⑧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7항제1호 중 "여성복지보건국장, 경제통상국장, 도시재생국장"을 "보건사회국장, 경제통상국장"으로 한다.
- ⑨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"여성보건복지국장"을 "보건사회국장"으로 한다.
- 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5조제1항 중 "여성복지보건국장, 도시재생국장, 교통국장"을 "가정복지국장, 건설교통국장"으로 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 (실·국·본부의 설치) 시의 행정사	제6조 (실·국·본부의 설치)
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관리실</u> ,	<u>기획관리실,</u>
<u>자치행정국</u> , 보건사회국, 가정복지국,	경제수도추진본부, 자치행정국,
경제통상국, 건설교통국, 문화관광체	
육국, 도시계획국, <u>환경녹지국, 항만</u>	환경녹지국, 아시아
공항물류국,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	경기대회지원본부
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.	
레7코 (카히 라크) 사기 하 라크 사기 () 다	제7 2 (기하고기시)
제7조 (기획관리실)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다.	M/소 (기억단니걸)
1.~8. (생략)	1.~8. (현행과 같음)
9. 다수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	- 1. 3. (현 8 기 본 B 기
10. (생략)	 10. (현행과 같음)
11. 특수지역(서해5도서) 지원에 관한 사항	<u><</u> 삭 제>
<u> </u>	제7조의2(경제수도추진본부) 경제수도
	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	1. 경제수도추진 분야 발전비전과 전략 수립 및 중·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	2.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·조
	정에 관한 사항
	3. 도시균형발전에 및 중ㆍ대형 지역
	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	4. 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
	5. 다수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
	6.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사항
	7. 항만 공항 화물자동차운수 물류에 관한 사항
	8. 해양개발 및 항만·공항건설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	 9. 특수지역(서해5도서) 지원에 관한 사항 10. 기업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 11.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관한 사항 12.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제9조 (보건사회국) 보건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· 2. (생략) 3. 보건, 건강, 의·약무, 의료보험, <u>질병, </u>	 1.·2.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가정복지국) 가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여성·보육복지 및 다문화가족지원</u> 에 관한 사항 2.·3. (생략)	
제10조 (경제통상국) 경제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(생략) 2. 기업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 3.~5. (생략) 6.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관한 사항 7.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.~12. (생략) < 신 설> <신 설>	1. (현행과 같음) < <u>삭 제></u> 3.~5. (현행과 같음) < <u>삭 제></u> < <u>삭 제></u> 8.~12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 (항만공항물류국) 항만공항물류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.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 3. 공항물류에 관한 사항 4. 화물자동차운수·물류에 관한 사항 5. 해양개발 및 항만·공항건설에 관한 사항 6.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.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	<삭 제>
제17조 (소방안전본부) 소방안전본부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.~3. (생략) 4. 119종합방재센터, 교육대 및 소방 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5.·6. (생략)	제17조 (소방안전본부) 소방안전본부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.~3. (현행과 같음) 4. 119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항공대 5.·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절의2 소방안전학교 제2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3조 및「지 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제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 (이 하 이 절에서 "소방학교"라 한다)를 둔다. ②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 동에 둔다.

현 행	개 정 안
	제26조의3(업무)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.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. 소방전문기술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	제26조의4(하부조직 등) 소방학교의 하 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.
제38조 (설치) 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, 건축물 건립 및설비공사,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, 건단지역 도시개발사업,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를 둔다.	<u>검</u> <u>검</u> 단지역 구획정리사업
제39조(업무)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~9. (생략) 10.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 11. 2014.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 12. (생략)	제39조(업무)

현 행	개 정 안
부칙<2007-07-30 조례 제4030>	부칙<2007-07-30 조례 제4030>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① (생략) 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은 2010년 8 월 31일까지로 한다. ③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 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	□ 지방자치법○ 제113조 (직속기관)
	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○ 제5조 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 ○ 제6조 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
관계법령	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○ 제2조 (설치 등)
	"별 첨"
관련법규 정비대상	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관련자료	"해당사항 없음"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 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5조 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
- 2.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
- 3.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
- 4. 주민편의,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
- 5. 통솔범위,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
- 6. 사무의 위탁가능성

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

- ② 실·본부[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도나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한한다]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.
-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 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(국장은 제외한다) 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,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.
-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외에는 12명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
- 1. 국의 소관 업무(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)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
- 2.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
-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 사를 말한다)의 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·보좌기 관인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 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·국 또는 과·담당관으로 본다.

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

제2조 (설치 등)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그 관할구역안 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학교를 폐지·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